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2023. 6. 12.)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페이지
1.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1
2. 2023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3-90
----------	-------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 나. 제 출 일 : 2023. 5. 19.
- 다. 회 부 일 : 2023. 5. 25.

2. 결산현황

가. 세입결산

-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만8,43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음.

(단위 : 원)

과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현액 대비	징수 대비
합 계	-	-	28,430	28,430	-	-	100.0%
세외수입	-	-	28,430	28,430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	-	28,430	28,430	-	-	100.0%

- 임시적 세외수입(기타수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분 직원 초과근무수당 과오지급액 반납금(28,430원)임.

나. 세출결산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186,280,000	4,186,280,000	3,108,473,012	-	1,077,806,988
선진의회상 정립	1,769,588,000	1,769,588,000	1,439,408,668	-	330,179,332
의정활동 지원	1,670,812,000	1,669,812,000	1,346,199,288	-	323,612,712
의정활동 홍보	98,776,000	99,776,000	93,209,380	-	6,566,620
행정운영경비	2,416,692,000	2,416,692,000	1,669,064,344	-	747,627,656
인력 운영비	2,262,492,000	2,262,492,000	1,548,795,520	-	713,696,480
기본경비	154,200,000	154,200,000	120,268,824	-	33,931,176

-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41억8,628만원으로,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74.25%인 31억847만3,012원이 지출되었고, 10억7,780만6,988원(25.75%)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6억6,981만2,000원 중 13억4,619만9,288원을 집행했음.
 - ‘의정활동 홍보’는 예산현액 9,977만6천원 중 9,320만9,380원을 집행했음.
 -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4억1,669만2,000원 중 16억6,906만4,344원을 집행했음.
- 집행잔액 구분
 - 의정활동 지원: 3억2,361만2,712원(불용률 18.66%)
 - 의정활동 홍보: 656만6,620원(불용률 19.38%)
 - 인력운영비: 7억1,369만6,480원(불용률 31.54%)
 - 기본경비: 3,393만1,176원(불용률 22.00%)

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원)

과목	집행잔액				
	계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 생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1,077,806,988	2,525,000	-	1,075,281,988	-
선진의회상 정립	330,179,332	2,525,000	-	327,654,332	-
의정활동 지원	323,612,712	2,525,000	-	321,087,712	-
의정활동 홍보	6,566,620	-	-	6,566,620	-
행정운영경비	747,627,656	-	-	747,627,656	-
인력운영비	713,696,480	-	-	713,696,480	-
기본경비	33,931,176	-	-	33,931,176	-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 집행잔액 10억7,780만6,988 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에서 예산절감액으로 252만5,000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과목의 지출잔액으로 10억7,528만1,988원이 발생하였음.

라. 연도별 예산 집행액 및 집행잔액 현황 <표 1.>

(단위 : 천원)

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2	4,186,280	3,108,473	1,077,807	25.75%
2021	4,607,348	3,886,253	721,095	15.65%
2020	3,868,848	3,487,930	380,918	9.85%
2019	3,950,236	3,553,528	390,724	9.89%
2018	3,957,111	3,449,764	478,592	12.09%

- 2022년 예산액은 2021년도 대비 △4억2,106만8천원 감소되었으나, 불용액은 3억5,671만2천원 증가함.

마. 과다불용액(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 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보수	1,739,860,000	1,064,246,500	675,613,500	38.83%
공공운영비	31,452,000	29,318,458	2,133,542	6.78%
국내여비	43,420,000	14,165,800	29,254,200	67.37%
국제화여비	24,000,000	-	24,000,000	10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81,000	3,562,300	318,700	8.2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20,000	1,050,000	1,270,000	54.7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494,000	41,432,220	9,061,780	17.9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00,000	6,889,750	1,510,250	17.98%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00,000	2,850,000	4,950,000	63.46%
직급보조비	52,680,000	37,359,820	15,320,180	29.08%
특정업무경비	14,400,000	9,419,350	4,980,650	34.59%
의정활동비	237,600,000	224,326,670	13,273,330	5.59%
월정수당	565,713,000	534,109,560	31,603,440	5.59%
의원국내여비	11,555,000	7,407,600	4,147,400	35.89%
의원국외여비	14,175,000	-	14,175,000	100.00%
의정운영공통경비	109,188,000	89,935,804	19,252,196	17.6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893,000	114,394,140	6,498,860	5.38%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7,700,000	898,000	6,802,000	88.34%
의원정책개발비	90,000,000	-	90,000,000	100.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7,820,000	13,921,040	3,898,960	21.88%
기타보상금	1,000,000	931,000	69,000	6.90%
포상금	6,000,000	5,213,600	786,400	13.11%
성과상여금	101,543,000	80,534,650	21,008,350	20.69%
의원상해부담금	39,600,000	-	39,600,000	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97,322,000	50,135,150	47,186,850	48.49%
도서구입비	4,000,000	3,036,420	963,580	24.09%

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 예산 이용·이체: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총 1건, 1,000,000원
 - 제9대 마포구의회 슬로건 공모를 위한 예산 전용 (1,000천원)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	입법및 선거관리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무관리비	75,557,000	1,000,000	-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기타보상금	-	-	1,000,000

- 예산 변경: 총 3건, 66,470,000원
 - 제9대 마포구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물품 구매를 위한 변경 사용 (8,000천원)
 - 구의회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 변경 사용 (7,470천원)
 - 마포구의회 사무국 정책지원관 등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 변경 사용 (51,000천원)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변경	입법 및 선거관리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공공운영비	20,500,000	8,000,000	-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무관리비	75,557,000	-	8,000,000
	입법 및 선거관리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4,792,000	7,470,000	-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시설비	55,000,000	-	7,470,000
	기타	인력운영비	보수	1,790,860,000	51,000,000	-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317,409,000	-	51,000,000

사. 다음연도 이월액 : 해당 없음.

아. 기금 결산 : 해당 없음.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¹⁾ 등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임.
-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및 건의(권고) 사항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은 없음.

<표 2. 결산 검사위원 명단>

검사기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구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2023. 4. 10.~ 5. 8.	차해영	고병준	변석준	주상민	김동현	정용식	하치영

- 2022회계연도 결산 중 의회사무국의 세입결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회사무국의 세입예산은 직원의 초과수당 과오지급에 따른 반납으로 발생하였음.
-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수당 및 급여 등의 과오지급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1억8,62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74.25%인 31억847만3,012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10억7,780만6,988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전년도 불용률 15.65%와 비교하면 불용률이 다소 증가함.(15.65%→25.75%)
- 최근 5년간 세출 결산액 추이는 본보고서 <표 1.>과 같으며, 예산집행 결과 불용률(25.75%)은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음. 마포구(일반회계) 평균 불용

1)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률(7.99%)²⁾과 비교하면 의회사무국의 불용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20% 이상인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정책개발비, 의원상해부담금 등의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와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3.9.)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인건비(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파견직 공무원의 보수를 구청과 구분하여 편성하지 않아 과다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
- 이는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나, 예산 편성전 제도 및 정책의 이해를 위한 사전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한편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 등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의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2년 예산현액 총 12억2,006만7천원 중 10억4,304만2,344원을 집행하였음.
- 의원국외여비의 경우 100% 불용 됐으며, 의원국내여비 또한 위원회별 세미나 취소 등의 사유로 35.89%의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국제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원활한 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으로 2022년 추경을 실

2) 2022 회계연도 마포구 결산서

시하였음에도 감추경을 시행하지 않아 불용된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일부 광역시도의회³⁾에서는 시민들의 고통 분담 등의 이유로 당초 예산에서 의원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음.
- 향후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액조정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확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와 강사료로 사용되는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의 불용률은 88.34%로 전반기 대통령선거 및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반기 의회 의사일정의 집중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연도별 불용률이 2019년 77.84%, 2020년 65.43%, 2021년 88.51%로서 해마다 높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의원역량개발이 민간위탁에 치중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 국회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의 공공기관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체 교육프로그램 편성 등 의원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음.
-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불용액은 정책지원관 채용인원 변동에 따른 사무집기 미구매, 국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하여 의장 의전차량 구매를 장기렌트로 변경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극적인 정책 변경 사례로 판단되나, 면밀한 사전계획이 부족하여 과도한 예산편성 후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감추경을 실시해야 하겠음.
- 의원정책개발비에 경우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원정수에 최대한도로 편성하여 집행되지 않아 매년 100% 불용되고 있음.
- 향후 예산편성시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편성하는 등의 예산계획을 수립할

3) 광주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북도의회, 강원도의회

필요가 있음.

- 구의회 사무국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예년에는 장기화된 코로나 발생으로 책임을 면하였으나, 2022년은 4월부터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되고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외부활동이 대부분 재개되어 2022년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코로나 발생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좀 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수행방식 변경 및 적극적인 예산조정으로 불용률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겠음.
- 예산이용·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100만원, 1건과 예산 변경 6,647만원, 3건으로 소요 예산을 사용했음.
- 예산 전용한 ‘제9대 마포구의회 슬로건 공모’ 건은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9대 마포구의회 개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계획 및 수요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임.
- 예산 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예산 편성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집행단계에서 전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예산 전용을 한 경우 「지방재정법」⁴⁾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예산 변경 3건 ‘제9대 마포구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물품 구매’, ‘구의회 환경개선’, ‘사무국 정책지원관 인건비 부족분’은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전검토가 미비했던 것으로 사료됨.

4)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

- 예산은 원칙적으로 사업 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편성 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재량에 따라 예산 변경을 남용할 경우 의회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변경은 가급적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향후에는 전년도 답습이 아닌 사업수행 환경 및 상황에 따라 기민하고 탄력적인 예산집행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권이 여전히 단체장에게 부여된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 등과 관련해 구의회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마포구와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박 철 호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023년 제1회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3-62
----------	-------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 나. 제 출 일 : 2023. 5. 19.
- 다. 회 부 일 : 2023. 5. 25.

2.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해당 없음.

나. 세 출

-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2,542만4천원 증가한 40억4,7695만3천원임.

(단위:천원)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047,693	3,922,269	125,424	3.20%
정책사업	1,955,506	1,830,082	125,424	6.85%
재무활동	0	0	0	0.00%
행정운영경비	2,092,187	2,092,187	0	0.00%

다. 추가경정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단위사업(회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047,693	3,922,269	125,424	3.20%
일반공공행정	1,955,506	1,830,082	125,424	6.85%
입법및선거관리	1,955,506	1,830,082	125,424	6.85%
선진의회상 정립	1,955,506	1,830,082	125,424	6.85%
의정활동 지원	1,825,200	1,753,576	71,624	4.08%
의정활동 홍보	130,306	76,506	53,800	70.32%
기타	2,092,187	2,092,187	0	0.00%
기타	2,092,187	2,092,187	0	0.00%
행정운영경비	2,092,187	2,092,187	0	0.00%
인력운영비	1,921,288	1,921,288	0	0.00%
기본경비	170,899	170,899	0	0.00%

라. 추가경정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사무관리비	253,037	250,729	2,308	0.92%
행사운영비	5,400	3,000	2,400	80.00%
행사실비지원금	5,400	0	5,400	순증
시설비	66,218	8,390	57,828	689.25%
자산및물품취득비	132,728	75,240	57,488	76.41%

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총 계	1,955,506	1,830,082	125,424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1,743,545	1,671,921	71,624
일반운영비	118,264	114,456	3,808
사무관리비	84,910	83,502	1,408
1)사무용 소프트웨어한컴오피스2020(속기사)(신규)	580	0	580
1)사무용 소프트웨어 MS오피스(속기사)(신규)	828	0	828
행사운영비	5,400	3,000	2,400
1)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신규)	2,400	0	2,400
2)현수막 등 행사준비(신규)	2,400	0	2,400
일반보전금	66,218	8,390	57,828
행사실비지원금	5,400	0	5,400
1)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신규)	5,400	0	5,400
2)발제자 수당(신규)	2,880	0	2,880
2)토론자 수당(신규)	2,520	0	2,520
시설비및부대비	66,218	8,390	57,828
시설비	66,218	8,390	57,828
1)의원연구실 방음공사(신규)	53,610	0	53,610
1)전동블라인드 수리·천 교체(신규)	2,948	0	2,948
1)사무국장 탕비실 싱크대 교체(신규)	1,270	0	1,270
자산취득비	83,828	79,240	4,588
자산및물품취득비	79,828	75,240	4,588
1)사무용 전산장비(속기사)(신규)	2,916	0	2,916
2) PC(신규)	2,376	0	2,376
2) 모니터(신규)	540	0	540
1)문서세단기(신규)	1,672	0	1,672
의정활동 홍보	130,306	76,506	53,800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97,306	43,506	53,800
일반운영비	44,406	43,506	900
사무관리비	31,774	30,874	900
1)의정활동 사진영상 편집(신규)	900	0	900
2)편집 프로그램(신규)	600	0	600
2)저장장치(신규)	300	0	300
자산취득비	52,900	0	52,900
자산및물품취득비	52,900	0	52,900
1)의정활동 사진영상 촬영(신규)	15,300	0	15,300
2)카메라바디(신규)	3,000	0	3,000
2)카메라렌즈 4중(신규)	7,000	0	7,000
2)조명(신규)	3,500	0	3,500
2)삼각대(신규)	1,000	0	1,000
2)마이크(신규)	800	0	800
1)의정활동 사진영상 편집(신규)	4,600	0	4,600
2)편집용 노트북(신규)	4,000	0	4,000
2)편집용 헤드폰(신규)	600	0	600
1)의정홍보 디지털 게시판(55인치 2면)(신규)	33,000	0	33,000

3. 검토결과

가. 예산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억2,226만9천원보다 3.2%, 1억2,542만4천원이 증가한 40억 4,769만3천원임.

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예산편성 내역은 사무관리비 속기사 사무용 소프트웨어구입으로 140만8천원(1.69%), 행사운영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으로 240만원(80%), 행사실비지원금 공청회 및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의 수당 540만원(순증), 시설비 (의원연구실 방음공사, 전동블라인드 수리천 교체, 사무국장 탕비실 싱크대 교체) 5,782만8천원(689.25%), 자산및물품취득비 (속기사 사무용 전산장비 구입, 문서세단기 구입) 458만8천원(6.1%) 총 7,16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의정활동 홍보 예산편성 내역은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사진영상 편집 관련 90만원(2.92%),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정활동 사진영상 촬영 관련 1,530만원(순증), 의정활동 사진영상 편집 관련 예산으로 460만원(순증), 의정홍보 디지털 게시판 구매 예산 3,300만원(순증) 총 5,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4.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이라 한다.)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임.

- 2023회계연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경안은 제9대 마포구의회 개원 이후 적극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 구입 및 사무국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기간제 속기사 근무에 따른 전산장비(PC, 모니터)와 이에 따른 사무용 소프트웨어(한컴오피스, MS오피스) 구입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임대해서 사용했던 컴퓨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준비를 위해 구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향후 의회사무국 직원의 컴퓨터도 정수물품 관리 차원에서 노후도를 파악하여 PC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비의 신규편성 내역은 의원연구실 방음공사, 전동블라인드 수리·천 교체, 사무국장 탕비실 싱크대 교체 사업으로 의원연구실 및 사무국의 시설 개선과 노후화에 따른 보강차원에서 편성하였음.
- 의회는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별도의 중·장기 관리계획이 없으므로 이를 마련하여 향후에는 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시기별 적절하게 유지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음. 아울러, 의원연구실 방음공사에 경우 그 효과성과 사업비의 추가 및 시급성 등이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공청회 및 토론회의 운영 관련 예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이 2023년 2월에 제정됨에 따라 토론회 개최시 필요한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예산인 카메라와 노트북 등의 구매는 의정활동 촬영, 편집에 필요한 전문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집행시 거래가격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음.
- 추경편성은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⁵⁾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금회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재검토하여 충분히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하고 상시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박 철 호

5)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지연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 방지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